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정수시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「수도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)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‘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’에 따라 정수시설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.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○본부는 일반수도사업자로 ○○정수시설(270,000톤/일) 및 ○○정수시설(280,000톤/일) 등 2개의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.

따라서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‘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’에 따라 10만 m^3 /일 이상 50만 m^3 /일 미만 시설규모에 해당하는 ○○정수시설과 ○○정수시설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각각 1급 1명, 2급 3명, 3급 4명을 배치하여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○○○○○본부는 아래의 [표]과 같이 ○○정수시설은 1급 0명, 2급 1명, 3급 4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, ○○정수시설은 1급 1명, 2급 1명, 3급 4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‘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’을 위반한 상태로 정수시설을 운영·관리하고 있다.

[표] 정수시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

구 분	시설용량 (㎥/일)	배치기준	배치인원	부족인원	감사 시 지적사항
합 계	550,000	1급 2명 2급 6명 3급 8명	1급 1명 2급 2명 3급 8명	1급 △1명 2급 △4명	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배치기준 위반
○○정수장	270,000	1급 1명 2급 3명 3급 4명	1급 0명 2급 1명 3급 4명	1급 △1명 2급 △2명	
○○정수장	280,000	1급 1명 2급 3명 3급 4명	1급 1명 2급 1명 3급 4명	2급 △2명	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‘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’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·관리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